

# [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44-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최고 26층, 총 5개동 총 295세대 중 일반분양 237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 범위)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59A	59.8352	22.5921	82.4273	38.5828	121.0101	8	2023년 하반기 (예정)
	59B	59.9209	25.7546	85.6755	38.6381	124.3136	4	
	59C	59.9759	26.0000	85.9759	38.6700	124.6459	4	
	84	84.9302	25.8900	110.8202	54.7500	165.5702	6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남양주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59A	59B	59C	84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3)	1(3)	-	1(3)	3(9)
	장기복무 제대군인	1(3)	-	1(3)	1(3)	3(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3)	1(3)	-	1(3)	3(9)
	중소기업 근로자	1(3)	-	1(3)	1(3)	3(9)
	장애인	4(12)	2(6)	2(6)	2(6)	10(30)
소계		8(24)	4(12)	4(12)	6(18)	22(66)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기관추천(장애인) 배정 안내

(단위 : 세대)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59A	59B	59C	84	합계
장애인 배정내역	경기도	2(6)	1(3)	1(3)	-	4(12)
	서울특별시	1(3)	1(3)	-	1(3)	3(9)
	인천광역시	1(3)	-	1(3)	1(3)	3(9)
	소계	4(12)	2(6)	2(6)	2(6)	10(30)

### ■ 분양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2021년 4월 9일	일간신문 및 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 홈페이지 ( <a href="http://deokso7raon.com/">http://deokso7raon.com/</a> )
건본주택 개관(예정)	-	덕소 강변 라온프라이빗 홈페이지 ( <a href="http://deokso7raon.com/">http://deokso7raon.com/</a> )
특별공급 접수일시(예정)	2021년 4월 19일	인터넷 청약접수(08:00~17:30) 청약홈( <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 ) 또는 청약홈 앱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2021년 4월 28일	한국부동산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홈( <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 ) 또는 청약홈 앱에서 조회가능

-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4. 9.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남양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 청약제한사항 확인 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행정사항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III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청약홈) 신청이 원칙이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합니다.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IV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1. 4. 9.(금)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사이버 견본주택(<http://deokso7raon.com/>)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 4. 9.(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관련문의 : 1811-2202